(:)



[시행 2019, 7, 16.] [대통령령 제29976호, 2019, 7, 9., 일부개정]

원자력안전위원회 (생활방사선안전과) 02-397-7237

- **2** (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·방사능 감시기(이하 "감시기"라 한다)의 설치·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하
 - 2.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(이하 "전문기관" 이라 한다)의 지정 ·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4 ()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
 - 1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 · 관리하는 시설이 화재 · 침수로 인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없을 것
 - 2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관리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확보할 것
 - 3. 등록하려는 가공제품이 법 제15조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(법 제9조제1항제 5호의 자만 해당한다)
 - ②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"이란 사업소별 연간 취급·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 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수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.
 - 1. 포타슘 40의 경우: 1만킬로베크렐
 - 2.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: 1천킬로베크렐

[전문개정 2019. 7. 9.]

- **9** ()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"란「항공사업법」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. 〈개정 2017. 3. 29. 〉
-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(이하 "승무원"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(이하 "항공운송사업자"라 한다)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 한다.
- **15** ()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,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- 1. 시설: 방사능 분석,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실험시설
- 2. 장비: 방사능 분석,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,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평가에 필요한 장비
- 3. 인력: 다음 각 목의 인력
 - 가. 방사능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
 - 나.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

<제29976호, 2019. 7. 9.>

- **1** 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2 (건강진단 시기에 관한 특례)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이 영 시행 당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관리하는 종사 자에 대하여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